|  |  |  |
| --- | --- | --- |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43호)**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이 2020년 4월 29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개정되어 이에 공표하며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20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防治)법**  (1995년 10월 30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통과, 2004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제1차 개정, 2013년 6월 29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등 12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5년 4월 24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등 7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11월 7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등 12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0년 4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제2차 개정)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감독관리  **제3장** 산업고체폐기물  **제4장** 생활쓰레기  **제5장** 건축폐기물, 농업고체폐기물 등  **제6장** 위험폐기물  **제7장** 보장조치  **제8장** 법적 책임  **제9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생태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고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공중의 건강을 보장하며 생태안전을 유지하고 생태문명의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는 이 법을 적용한다.  고체폐기물의 해양환경오염방지 및 방사성 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국가는 그린 발전방식을 실시하며, 청정생산과 순환경제 발전을 촉진시킨다.  국가는 검소하고 적정하며 그린 저탄의 생활방식을 창도하며, 공중들이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제4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감량화, 자원화, 무해화 원칙을 지킨다.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모두 조치를 취하여 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하고 고체폐기물의 종합 이용을 촉진시키고 고체폐기물의 위해성을 줄여야 한다.  **제5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오염자가 책임을 담당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고체오염물 발생, 수집, 저장, 운송, 이용 혹은 처리를 하는 단위와 개인은 마땅히 조치를 취해 고체오염물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감소해야 하며, 법에 따라 그로 인해 초래된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 국가는 생활쓰레기 분류제도를 실행한다.  생활쓰레기 분류는 정부가 추진하고 전국민이 참여하고 도농을 통합하며 각지 실정에 맞는 대안을 취하여 간단하고 추진이 용이한 원칙을 지킨다.  **제7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목표 책임제와 검정 평가제도를 실행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목표 완성 상황을 검정 평가 내용에 넣어 관리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유관부문을 조직, 조율, 독촉하여 법에 따라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는 행정구역을 벗어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연합방지기제를 설립하여 계획 제정, 시설 건설, 고체폐기물 전이 등 업무를 통일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문은 전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자연자원, 주택도농건설, 교통운수, 농업농촌, 상무, 위생건강, 세관 등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문은 본 행정구역 고체오염물 환경오염 방지 업무에 대한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지방 인민정부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자연자원, 주택도농건설, 교통운수, 농업농촌, 상무, 위생건강 등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 감독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10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과학연구, 기술개발, 선진기술 및 과학지식 보급을 격려, 지원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한 과학기술 지원을 강화한다.  **제11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단위, 기층 대중성 자치조직, 언론사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홍보 교육과 과학지식 보급을 강화하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에 대한 대중의 방지의식을 증강시켜야 한다.  학교는 생활쓰레기 분류 및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지식 보급과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제12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 및 관련 종합이용 활동에서 뚜렷한 성과를 취득한 회사, 개인에 대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장려한다.  **제2장**  **감독관리**  **제1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사업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생태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며 아울러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고체폐기물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고체폐기물의 위해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고체폐기물의 매장량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국가환경질표준 및 국가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고체폐기물 감별기준, 감별절차 및 국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을 제정한다.  **제15조** 국무원 표준화 주관부문은 국무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생태환경, 농업농촌 등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고체폐기물 종합이용표준을 제정해야 한다.  고체폐기물 종합이용은 생태환경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기술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고체폐기물 종합이용 생성물의 사용은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6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는 국무원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전국 위험폐기물 등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고체폐기물 수집, 이전, 처리 등 전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화 소급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제17조** 고체폐기물의 발생, 저장, 이용, 처리 프로젝트 건설은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며 동시에 국가의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8조**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에서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부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경우에는 주체 공사와 함께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의 초보적 설계는 환경보호 설계규범의 요구에 따라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내용을 환경영향평가서류에 편입시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과 생태파괴 방지 조치, 그리고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투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건설단위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부대 건설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해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고체폐기물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관련시설, 설비 및 장소에 대한 관리와 유지보수를 강화하여 그 정상적인 운행과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고체폐기물을 생성,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회사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고체폐기물의 확산, 유실, 침습 및 기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적치해 두어서는 안된다.  어떠한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하천, 호수, 운하, 관개수로, 댐 및 기타 고(高) 수위선 이하의 사주, 기슭지역, 그리고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장소에 고체폐기물을 버리거나 적치, 저장보관해 두어서는 안된다.  **제21조** 생태보호 레드구역, 영구성 기본 농경지 집중구역, 기타 특별 보호가 필요한 구역 내에서 산업폐기물, 위험폐기물을 집중저장, 이용, 처리하는 시설, 장소, 그리고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고체폐기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 저장, 처리해야 될 경우 본 성,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새태환경 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출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지체 없이 고체폐기물 접수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협상하여 동의를 얻은 후 규정한 기한 내에 당해 고체폐기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에서 전출하도록 허가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할 수 없다.  고체폐기물을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에서 전출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체폐기물 전출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전출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마땅히 등록정보를 접수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제23조**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국내로 수입하여 퇴적, 처리하거나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을 금지한다.  **제24조** 국가는 고체폐기물의 제로 수입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에서 국무원 상무, 발전개혁, 세관 등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조직 실시한다.  **제25조** 세관에서 수입화물을 고체폐기물로 의심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구에 위탁하여 속성 감별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감별 결론에 따라 법적 관리를 실시한다.  **제26조**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그 환경 법 집행기구,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내에서 고체폐기물의 생성,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 등 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피검사회사는 사실대로 보고해야 하며 아울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검사는 현장모니터링, 샘플채집,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된 자료 열람 혹은 복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검사요원은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관련 신분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 검사중에서 알게된 상업비밀은 비밀에 붙여야 한다.  **제27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문은 불법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한 고체폐기물 및 그 시설, 설비, 장소, 수단, 물품을 차압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   1. 증거의 멸실, 은닉 혹은 불법 전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엄중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초래 가능한 경우.   **제28조**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고체폐기물 생성,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 회사와 기타 생산경영자에 대한 신용기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관련 신용정보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플랫폼에 등록한다.  **제29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주택도농건설, 농업농촌, 위생건강 등 주관부문과 회동하여정기적으로 사회에 고체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능력, 이용 처리상황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고체폐기물 생성,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 회사는 법에 따라 지체없이 고체폐기물 환경방지정보를 공개하여 스스로 사회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체페기물 이용, 처리 회사는 법에 따라 공중에 시설, 장소를 개방하여 공중의 환경보호 의식과 참여정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산업 고체폐기물, 생활쓰레기, 위험폐기물 등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장비 상황을 환경상황과 환경보호목표 완성상황 연도보고서에 편입시켜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혹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제31조** 어떠한 회사, 개인을 막론하고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을 초래한 회사 또는 개인을 고발할 수 있다.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문은 마땅히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고발방식을 사회에 공개하여 공중의 고발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고발을 접수한 부문은 지체 없이 처리함과 아울러 고발인의 관련 정보에 대해 비밀을 고수해야 하며, 실명으로 고발함과 아울러 심사를 거쳐 확실한 경우에는 장려를 한다.  고발인이 소재 회사를 고발한 경우 당해 회사는 노동계약 해지, 변경 혹은 기타 방식으로 고발인을 공격 보복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산업고체폐기물**  **제32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국무원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등 주관부문과 공동으로 공중의 건강, 생태환경 등에 대한 산업고체폐기물의 피해 및 영향정도 등에 대해 환경오염 범주를 확정하고 산업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 기술정책을 제정하며 산업고체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 선진 공법 및 설비를 보급시켜야 한다.  **제33조**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산업고체폐기물의 발생량 및 산업고체폐기물 위해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산공법 및 설비를 연구 및 개발, 보급시키며, 산업고체폐기물 발생이 심각하고 규정시간 내에 도태시켜야 할 낙후한 공법, 설비 명단을 발표한다.  생산자, 판매자, 수입자,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부문과 국무원 유관부분이 공동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생산, 판매, 수입을 중지하거나 또는 상기 조례에서 나열한 설비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생산공법 사용자는 반드시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부문과 국무원 유관부분이 공동으로 규정한 기한 내에, 전 항 규정에서 열거한 공법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최후통첩을 내린 도태리스트에 나열된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4조** 국무원 공업정보화 주관부문은 국무원 발전개혁, 생태환경 등 주관부문과 회동하여 정지적으로 산업고체폐기물 종합이용기술, 공법, 설비 및 제품 지도목록을 발표하며 산업고체물 자원종합이용 평가를 조직 실시하여 산업고체폐기물의 종합이용을 촉진시킨다.  **제35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산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계획을 제정하고 산업고체폐기물 집중처리 등 시설을 건설하며 산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추진시킨다.  **제36조**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산업고체폐기물 생성, 수집, 저장, 운송, 이, 처리 전반과장의 환경오염방지 책임제도를 구축하고, 산업고체폐기물 관리대장을 건립하여 산업고체폐기물의 생성 종류, 물량, 행방, 저장, 이용, 처리 등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함으로써 산업고체폐기물의 원천소급, 조회를 실현함과 아울러 산업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집시설 중에 산업고체폐기물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7조** 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타이ㅣㄴ에게 위탁하여 산업고체폐기물을 운송, 이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인의 주체자격과 기술능력을 조사 확인하고 법에 따라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중에 오염방지 요구에 대해 약정해야 한다.  수탁인이 산업고체폐기물을 운송, 이용, 처리 시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오염방지요구를 이행해야 하며, 아울러 운송, 이용, 처리상황을 산업고체폐기물 생성 회사에 고지해야 한다.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가 이 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그 밖에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래한 수탁인의 연대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제38조**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법에 따라 청정생산 심사를 실시하여 원자재, 에너지 및 기타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선진적인 생산공법과 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산업고체폐기물의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산업고체폐기물의 위해성을 낮추어야 한다.  **제39조**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오염물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오염물배출허강ㅢ 구체적 방법과 실시절차는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부문에 산업고체폐기물의 종류, 물량, 행방, 저장, 이용, 처리 등 관련 자료, 그리고 산업고체폐기물 생성을 줄이고 종합이용을 촉진시키는 구체적 조치를 제공함과 아울러 오염물배출허가 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0조**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경제, 기술조건에 근거하여 자체 생산한 산업고체폐기물을 이용해야 한다. 잠시 이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는 산업고체폐기물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저장시설, 저장장소를 건설하거나 또는 분류하여 저장 또는 무해화 처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고체폐기물의 저장은 국가의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고체폐기물의 저장, 처리시설, 장소는 반드시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돼야 한다.  **제41조**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가 종료 시에는 종료 전에 산업고체폐기물의 저장, 처리 시설, 장소에 대해 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미처리된 산업고체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회사는 국가의 환경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미처리된 산업고체폐기물 및 그 저장, 처리 시설, 장소에 대해 안전처분 혹은 유효한 조치를 취해 당해 시설, 장소의 안전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변경전에 당사자가 산업고체폐기물 및 그 저장, 처리 시설, 장소의 오염방지 책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방지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005년 4월 1일 전에 이미 종료된 회사의 미처리된 산업고체폐기물 및 그 저장, 처리 시설, 장소에 대한 안전처리 비용은 유관 인민정부에서 부담한다. 다만, 당해 회사가 향유하는 토지사용권을 법에 따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사용권 양수인이 처리비용을 부담하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그 약정에 따른다. 다만, 당사자의 오염방지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2조** 광산업체는 과학적인 채굴방법 및 선광 조치를 취해 미광,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의 생성량과 저장량을 줄여야 한다.  국가는 선진적인 공법을 취하여 미광,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에 대한 종합 이용을 장려한다.  미광,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저장시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광산업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장장소를 봉쇄하여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방지해야 한다.  **제4장 생활쓰레기**  **제4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분류 투입, 분류 수거, 분류 운송, 분류 처리하는 생활쓰레기 관리체계를 다그쳐 수립하여 생활쓰레기 분류제도의 효율적인 카바를 실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업무조율메커니즘을 수립하여 생활쓰레기 관리능력의 건설을 강화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 및 유관부서는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전개하여 공중들이 생활쓰레기 분류습관을 양성하도록 교육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독촉 및 지도해야 한다.  **제4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계획적으로 연료구조를 개선해야 하며 청정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연료 찌거기 등 고체폐기물의 생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유관부문은 제품생산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지나친 포장을 피면하고 시장에서 깨끗이 처리한 야채를 판매함으로써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제4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도농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처리시설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시설장소를 확정하고 생활쓰레기의 종합 이용과 무해화 처리수준을 높여 생활쓰레기 수집, 처리 산업화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생활쓰레기 환경오염방지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유관부문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회수, 분리수거, 포장지점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여 생활쓰레기 회수 이용 업무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4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생활스레기 환경오염 방지를 강화하여 농촌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해야 한다.  국가는 농촌 생활쓰레기의 원천적 감소를 장려한다. 도농 결합부, 인구가 밀집한 농촌지역과 기타 조건이 구비된 지역은 도농일체화 생활쓰레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기타 농촌지역은 생활쓰레기 관리방법을 적극 탐색하여 현지 실정에 맞추어 생활쓰레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47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문은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저장, 운송 및 처리시설, 장소의 건설운행규범을 제정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지도목록을 반포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4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 등 주관부문은 도농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를 조직하며 입찰 등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를 선택하여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사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 생활쓰레기를 생성하는 회사, 가정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원천적 감소와 분류 투입의 의무를 이행하고 생활쓰레기 생성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어떠한 회사나 개인도 모두 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분류 투입해야 한다. 생활스레기를 임의적으로 쏟아 버리거나 뿌리거나 퇴적하거나 연소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관, 사업단위 등은 생활쓰레기 분류업무 중에서 솔선수범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미 분류 투입한 생활쓰레기는 규정에 따라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분류 처리를 해야 한다.  **제50조** 도농 생활쓰레기의 청소, 수집, 운송, 처리는 국가 관련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를 분류 및 집중 수집한 유해쓰레기가 위험폐기물에 속하는 경우에는 위험폐기물에 따라 관리한다.  **제51조** 공공교통운송 경영업체는 적시에 운송과정에서 생성된 생활쓰레기를 청소, 수집해야 한다.  **제52조** 파머즛 마켓, 농산물도매시장 등은 환경위생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위생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발생된 스레기는 지체 없이 청소, 분류 수집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53조** 도시 신개발, 구(舊)도시 개축 및 주택건설개발, 촌진건설에 종사하는 기업과 공항, 부두, 정거장, 공원, 백화점, 운동장 등 공공시설 경영회사는 국가의 환경위생 관련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수집시설을 건설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공공 운송, 처리시설 및 전항에서 규정한 수집시설의 효율적인 연결을 통일적으로 계획함과 아울러 생활쓰레기 분류 수거 운송체계와 재생에너지 회수체계의 계획, 건설, 운영 등 면의 융합을 강화해야 한다.  **제54조** 생활쓰레기에서 회수한 물질은 국가에서 규정한 용도, 표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품생산에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장소의 건설은 반드시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국무원주택도농건설 주관부문에서 규정한 환경보호 및 환경위생 표준에 부합돼야 한다.  인근 지역에서 통일적으로 생활스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권장하며, 행정구역을 벗어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고 공유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을 스스로 폐지, 유휴 혹은 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폐지, 유휴 혹은 철거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소재지 시, 현 인민정부 위생행정 주관부문과 환경보호행정 주관부문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6조** 생활쓰레기 처리회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사용하여 오염물의 배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오염물 배출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모니터링장비는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부문의 모니터링장비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57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문은 주방 쓰레기의 자원화, 무해화 처리업무를 책임지고 전개해야 한다.  주장 쓰레기를 생성, 수거하는 회사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주방 쓰레기를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에 넘겨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에서 무해화 처리를 진행하지 아니한 주방 쓰레기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8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발생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생활 쓰레기 처리의 요금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생활 쓰레기 처리 요금기준을 제정 시에는 본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생활 쓰레기 분류상황에 결부시켜 분류별 가격 계산, 계량 요금 등 차별화 관리를 구현함과 아울러 공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생활 쓰레기 ㅇ금기준은 사회에 공개를 해야 한다.  생활 쓰레기 처리비용은 생활 쓰레기의 수집, 운송 및 처리 등에 전문 사용해야 하며, 타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9조**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는 실제에 결부시켜 본 지방의 생활 쓰레기 구체적 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5장 건축쓰레기, 농업고체폐기물 등**  **제6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건축쓰레기 환경오염 방지를 강화하고 건축쓰레기 분류처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원천적 감량, 분류 처리, 수거 시설, 그리고 장소구도 및 건설 등을 포함한 건축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업무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제61조** 국가는 선진 기술, 공법, 설비 및 관리조치를 취하여 건축쓰레기의 원천적 감소를 추진하고 건축쓰레기 회수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권장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건축쓰레기 종합이용제품의 응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62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문은 건축쓰레기 환경오염방지 업무를 책임지고 건축쓰레기 전반 과정의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건축쓰레기 생성,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 행위를 규율하고 종합이용을 촉진시키고 건축쓰레기 처리시설, 장소건설을 강화하고 처리 안전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63조** 공사 시공회사는 건축 스레기 처리방안을 편성하여 오염방지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공사 시공회사는 공사과정에서 생성된 건축쓰레기 등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운송, 처리해야 하며 환경위생 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리해야 한다.  공사 시공회사는 제멋대로 공사 과정에서 생성된 건축쓰레기를 쏟아 버리거나 뿌리거나 퇴적해서는 아니된다.  **제6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농촌 주관부문은 농업고체폐기물의 회수 이용체계 건설을 책임지고 유관 회사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이 법에 따라 농업고체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고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제65조** 짚대, 폐기 농업용 박막, 농약포장 폐기물 등 농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와기타 생산경영자는 회수 이용과 기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축의 규모화 양식에 종사 시에는 양식과정에서 생성된 가축 분변 등의 고체폐기물을 지체 없이 수집, 저장, 이용 혹은 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피면해야 한다.  인구밀집지역, 공항주변, 교통간선 부근, 그리고 현지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기타 구역에서 짚대를 노천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는 환경에서 분해 가능함과 아울러 무해한 농업용 박막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사용을 권장한다.  **제66조** 국가는 전기전자, 아연축전기, 차량용 동력배터리 등 제품의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를 구축한다.  전기전자, 아연축전기, 차량용 동력배터리 등 제품의 생산자는 규정에 따라 자기 건설 혹은 위탁 등 방식으로 젶무 판매량에 어울리는 폐기제품 회수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사회에 공개하여 효율적인 회수 및 이용을 실현한다.  국가는 제품 생산자가 생태 설계를 전개하여 자원 회수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67조** 국가는 폐기 전기전자 제품 등에 대한 다루트 회수 및 집중 처리제도를 실시한다.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폐기 기동차량과 선박 등을 회수, 해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기 전기전자 제품, 폐기 차량과 선박을 해체, 이용, 처리 시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8조** 제품 및 포장물의 설계, 제조는 반드시 그린생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무원 표준화 행정주관부문은 국가경제기술조건, 고체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오염상황 및 제품의 기술요구에 근거하여 관련 표준을 제정하여 포장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생산경영자는 상품의 지나친 포장을 제한하는 강제적 기준을 준수하여 지나친 포장을 피면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문과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지나친 포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법에 따라 강제회수 목록에 나열된 제품, 포장물을 생산, 판매, 수입하는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제품과 포장물을 회수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택배, 음식배달 등 업종은 중복 사용, 회수 용이한 포장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물품의 포장을 최적화 하여 포장물의 사용을 감소함과 아울러 포장물을 적극 회수 및 이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상무, 우체 등 주관부문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사용자가 그린 포장과 감량 포장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한다.  **제69조** 국가는 법에 따라 분해 가능한 비닐 등 1차적 비닐제품을 생산, 판매 및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상품 소매장소 운영회사,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과 택배기업, 음식배달기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 우체 등 주관부문에 비닐백 등 1차적 비닐제품의 사용, 회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국가는 비닐백 등 1차적 비닐제품의 사용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하며, 순환 가능하고 회수가 용이하고 분해 가능한 대체제품의 응용을 보급시킨다.  **제70조** 관광, 숙박 등 업종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1차적 용품을 주동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과 사업단위 등의 사무장소는 환경보호에 유리한 제품, 설비 및 시설을 사용하여 1차적 사무용품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제71조** 도시 오수처리시설 유지운영회사 혹은 오물 처리회사는 오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처리후의 오물은 국가 관련 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오물의 행방, 용도, 용량 등에 대한 추적, 기록을 함과 아울러 도시 배수 주관부문, 생태환경 주관부문에 보고를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시배수 주관부문은 슬러지 처리시설을 도시 배수와 오수 처리계획에 넣어 슬러지 처리시설과 오수 처리시설의 동시 건설을 추진해야 하며, 협동 처리를 장려한다. 오수 처리비용 징수기준과 보상범위는 슬러지 처리원가와 오수 처리시설의 정상적 운영원가를 카바해야 한다.  **제72조** 제멋대로 도시 오수처리 시설에서 생성된 슬러지와 처리후의 슬러지를 쏟아 버리거나 적치하거나 뿌려서는 아니된다.  중금속 혹은 기타 유독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을 초과한 스러지를 농경지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체 준설에 종사 시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준설 과정에서 생성된 슬러지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73조** 각급 각종 실험실 및 그 설립단체는 실험실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고체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를 해야 한다. 위험물에 속하는 실험실 고체폐기물은 위험물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  **제6장 위험폐기물**  **제74조** 위험폐기물 환경오염방지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의 기타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국무원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국가 위험폐기물 리스트를 작정하며 위험폐기물 감별표준과 감별방식, 식별표지, 감별단위 관리요구를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위험폐기물의 위해 특성과 발생량에 따라 그 환경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급별 및 분류 관리를 실시하며, 정보화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정보화 수단관리를 통해 위험폐기물 이전 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한다.  **제76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유관부문을 조직하여 위험폐기물 집중처리시설 및 장소의 건설계획을 제정하여 위험폐기물 처리요구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시설, 장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본 행정구역의 위험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시설, 장소의 건설계획은 유관 업계협회, 기업과 사업단체, 전문가 및 공중 등 여러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인근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는 지역간 협력을 전개하여 지역성 위험폐기물 집중 처리시설, 장소를 통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  **제77조** 위험폐기물의 용기 및 포장물 그리고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처리하는 시설에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밝혀야 한다.  **제78조** 위험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반드시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세워야 하며 위험폐기물 관리대장을 설정하여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록함과 아울러 국가 위험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부문에 위험폐기물의 종류, 생성량, 행방, 저장, 처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전항에서 언급한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은 위험폐기물 발생량과 위험폐기물의 위해성 감소 조치 그리고 위험폐기물의 저장, 이용, 처리조치를 포괄한다.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은 위험폐기물생성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가 이미 오수배출허가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오수배출허가 관리제도의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79조** 위험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는 국가 관련규정과 환경보호 표준의 요구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저장, 보관, 처리해야 하며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퇴적해 두어서는 안된다.  **제80조**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처리활동에 종사하는 경영회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증 관련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허가증이 없거나 또는 허가증 규정에 따르지 않고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이용, 처리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을 허가증이 없는 회사나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해서 수집, 저장, 이용, 처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81조**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은 위험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 진행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혼합수집, 저장, 운송하거나 또는 상호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을 띤 위험폐기물을 혼합 처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의 저장은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규정한 방지보호조치가 따라가야 하며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저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보관, 이용,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위험폐기물을 1년 이상 저장보관할 수 없다. 확실히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한 생태환경 주관부문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2조** 위험폐기물을 전이해야 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운행 전자 혹은 페이퍼 이전 운송기록전표를 기입하거나 관리를 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을 벗어나 위험폐기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험폐기물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에 신청해야 하며, 이전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접수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의 동의를 얻은 후에야 규정한 기한 내에 당해 위험폐기물의 이전을 허가하며, 아울러 허가정보를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교통운송 주관부문에 통보해야 한다. 허가 없이는 위험폐기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  위험폐기물 이전관리는 전반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국무원 교통운송 주관부문, 공안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83조** 위험폐기물을 운송할 때 환경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의 위험화물운송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험폐기물을 여객운송도구와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84조**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이용, 운송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제품을 기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오염소독처리 조치를 취한 후 기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85조** 위험폐기물을 생성, 수집, 저장, 운송, 처리에 종사하는 회사는 법에 따라 의외사고 방지조치 및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해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가진 부문은 마땅히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86조** 사고발생 또는 기타 돌발사고의 발생으로 환경에 미치는 위험폐기물의 오염정도가 심각할 때, 오염을 초래한 회사는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 환경오염을 해소 또는 감소시켜야 하며 오염 위험성이 있는 기타 회사와 주민에게 즉시 통지해주어야 한다. 동시 소재지생태환경 주관부문과 유관부분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처리를 접수해야 한다.  **제87조** 위험폐기물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 또는 위험폐기물이 서민의 생명 재산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파악했을 때, 생태환경 주관부문과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을 가진 부문은 즉시 본급 인민정부와 상급 인민정부 행정주관부문에 보고해야 하며 인민정부에서 방지 또는 위해 감소 유효조치를 취한다. 인민정부는 수요에 따라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이미 오염사고를 초래한 기업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88조** 중점위험폐기물 처리시설, 장소를 폐쇄시키기 전에 운영회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설, 장소에 대한 오염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쇄비용은 선인출하여 투자 예산 또는 경영원가에 넣어 중점 위험폐기물의 집중 처리시설, 장소의 폐쇄에 전문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출 및 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문, 가격주관부문과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부문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제89조** 중화인민공화국을 경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90조** 의료폐기물은 국가의 위험폐기물 명부에 따라 관리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폐기물의 집중처리 능력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건강, 생태환경 등 주관부문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의료폐기물의 수집, 저장, 운송, 처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중의 건강위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의료위행기구는 법에 따라 본 기구에서 생성된 의료폐기물을 분류, 수거하여 의료폐기물 집중 처리회사에 넘겨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집중처리회사는 지체 없이 의료폐기물을 수집, 운송 및 처리해야 한다.  의료위행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처리회사는 효율적인 조치를 취해 의료폐기물의 분실, 누설, 침식,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제91조** 중대한 전염병 역병 등 돌발사태가 발생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의료폐기물 등 위험폐기물의 수집, 저장, 운송, 처리 등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율하여 소요되는 차량, 장소, 처리시설 및 예방물자를 보장해야 한다. 위생건강, 생태환경, 환경위생, 교통운송 등 주관부문은 협종 협조하여 법에 따라 응급처리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제7장 보장조치**  **제92조** 국무원 유관부문,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기타 유관부문에서 국토공간계획과관련 전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생활쓰레기, 건축쓰레기, 위험폐기물 등 고체폐기물의 중계 운송, 집중처리 등 시설의 건설요구를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중계 운송, 집중처리 등 시설의 용지를 보장해야 한다.  **제93조** 국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유리한 경제, 기술 정책과 조치를 취해 관련측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에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고체페기물 환경오염 방지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양성과 지도를 강화하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산업의 전문화, 규모화 발전을 촉진시킨다.  **제94조** 국가는 과학기관, 고체폐기물 생산회사, 고체폐기물 이용회사, 고체폐기물 처리회사 등에서 함께 기술상의 난제를 돌파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고체폐기물 종합이용, 집중처리 등의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기술진보를 추진한다.  **제95조** 각급 인민정부는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장비를 강화하고 직권 획분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여 하기 사항에 사용해야 한다.   1.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의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2. 생활쓰레기 분류 3. 고체폐기물 집중처리 시설의 건설 4. 중대한 전염병 역병 등 돌발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등 위험폐기물의 응급 처리 5.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와 관련되는 기타 사항.   자금 사용은 실적관리와 감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자금의 사용효과를 보장해야 한다.  **제96조** 국가는 사회 각계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함과 아울러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적 지원을 한다.  **제97조** 국가는 그린금융을 발전시키고 금융기구에서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대출을 권장한다.  **제98조** 고체폐기물 종합이용 등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업무에 종사흔 경우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적용한다.  국가는 사회 각계의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산 기부를 권장하고 제창하며, 아울러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한다.  **제99조**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회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책임보험에 부보해야 한다.  **제100조** 국가는 회사와 개인이 종합이용 제품과 중복 사용가능한 제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유관부문은 정부조달 과정에서 종합이용 제품과 중복 사용가능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101조** 생태환경 주관부문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부문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주관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주요 책임이 있는 담당요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1) 법에 따라 행정허가 혹은 비준문건을 발급해야 하나 하지 아니한 경우  (2) 불법행위를 감싸준 경우  (3) 법에 따라 차압, 압류를 해야 하나 하지 아니한 경우  (4) 위법행위를 발견했거나 위법행위 신고를 받은 후 조치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직원을 남용하고 직무에 태만하고 사리를 도모하는 등의 기타 불법행위  **제10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하기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하고 벌금을 부과시키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준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조업 정지 혹은 폐업을 명할 수 있다.  (1) 고체폐기물을 생성, 수집, 저장, 운송, 이용, 처리하는 회사가 법을 어기고 제때에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2) 생활쓰레기 처리회사에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장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염물 배출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오염물 배출데이터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한부 도태리스트에 나열된 장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했을 경우  (4) 생태보호 레드구역, 영구적 기본 농경지 집중구역 및 기타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산업고체폐기물, 위험폐기물을 집중 저장, 이용, 처리하는 시설, 장소, 생활쓰레기 매립장을 건설했을 경우  (5) 비준을 받지 않고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을 벗어나 고체폐기물을 저장, 처리했을 경우  (6) 등록을 하지 않고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을 벗어나 고체폐기물을 이용했을 경우  (7) 고체폐기물을 쏟아 버리거나 적치하거나 뿌리거나 혹은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산업고체폐기물의 확산, 유실, 침투 또는 기타 환경오염을 초래했을 경우  (8)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가 고체폐기물 관리대장을 설정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9)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하는 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산업고체폐기물을 운송, 이용, 처리한 경우  (10) 산업고체폐기물을 저장함에 있어서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부합되는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회사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고체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타 요구를 위반하여 환경오염, 생태파괴를 초래한 경우.  전항 (1), (8)호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전항 (2), (3), (4), (5), (6), (9), (10), (11)호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전항 (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처리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되 필요한 처리비용이 10만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10만위안으로 계산한다. 전항 (11)호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0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 집행요원을 지연, 포위, 체류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감독검사를 거절, 저애하거나 혹은 감독검사를 받을 때 속임수를 쓴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문 또는 기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 감독관리직책을 가진 부문은 시정하도록 명하고 5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원에게는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제10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고체폐기물을 생성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시정 혹은 생산 제한, 조업정지 정돈을 명하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취득한 후 조업정지 혹은 폐업을 하도록 명한다.  **제10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산경영자가 상품의 과도한 포장에 대한 강제적 표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 혹은 유관부문은 시정하도록 명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0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사인이 심각한 경우에는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제10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의 불가 분해 비닐백 등 1차적 비닐제품의 사용 금지, 제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닐백 등 1차적 비닐제품의 사용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무, 우체 등 주관부문은 시정하도록 명하며,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제107조** 가축규모 양식업에 종사자가 양식 과정에서 생성된 가축 분변 등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수집, 저장, 이용 혹은 처리하지 않아니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문에서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하고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준권한을 가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업정지 혹은 폐업을 명한다.  **제10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시 오수처리시설 유지보수운영회사 혹은 슬러지처리회사에서 슬러지 행방, 용도, 용량 등에 대한 추적, 기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처리 후의 슬러지가 국가의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배수 주관부문은 시정하도록 명하고 경고를 주며,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시배수 주관부문은 정비능력을 갖춘 회사을 지정하여 대신 정비하도록 한 후 소요 비용을 불법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멋대로 도시우수처리시설에서 생성된 슬러지와 처리후의 슬러지를 쏟아 버리거나 적치하거나 뿌린 경우 도시배수 주관부문은 시정하도록 명하고 20만위안 이ㅏㅇ 2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고 직접 책임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원에게는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에는 20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고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인원에게는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시배수 주관부문은 정비능력을 구비한 회사를 지정하여 대신 정비하도록 한 후 소요비용을 위법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도태된 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했거나 또는도태된 생산공법을 사용했을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서 개선하도록 명하고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문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에 승인을 얻은 후 보고하여 조업정지 혹은 폐업을 명한다.  **제110조** 미광, 맥석, 폐석 등 광산 고체폐기물 저장시설의 사용을 중지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저장장소를 봉쇄하지 않았을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하고 2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제11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하고 벌금처벌을 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생활쓰레기를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뿌리거나 적치하거나 혹은 소각한 경우  (2) 사용하지 않는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처리장소를 스스로 폐지, 철거했을 경우  (3) 공사 시공회사에서 건축쓰레기 처리방안을 작성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제때에 수집, 운송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사 시공회사에서 환경위생행정 주관부문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이용 또는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5) 주방 쓰레기를 생성, 수집하는 회사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주방 쓰레기를 상응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회사에 넘겨 무해화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가축 양식장, 양식단지에서 무해화 처리를 하지 아니한 주방 쓰레기로 가축을 사육한 경우  (7) 운송 도중에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뿌린 경우.  회사에 전항 (1), (7)호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회사에 전항 (2), (3), (4), (5), (6)호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개인이 전항 (1), (5), (7)호 행위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1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생활쓰레기를 지정한 장소에서 분류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위생 주관부문은 시정하도록 명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회사에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개인도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112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생태환경보 주관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하고 벌금처벌을 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조업정지 혹은 폐업을 명할 수 있다.  (1) 규정한 바에 따라 위험폐기물 식별표지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계획을 제정하지 않았거나 위험폐기물 관련 자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제멋대로 위험폐기물을 쏟아 버리거나 적치한 경우  (4) 위험폐기물을 경영허가증이 없는 회사 혹은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에 제공 혹은 위탁하여 경영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5)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전이 운송기록전표를 기입, 관리하지 않았거나 또는 유관부분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위험폐기물을 전이했을 경우  (6) 국가 환경보호표준에 따라 위험폐기물을 저장, 이용, 처리하지 않았거나 혹은 위험폐기물을 비(非)위험폐기물과 혼합하여 저장했을 경우  (7) 안전처리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간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을 띤 위험폐기물을 혼합 수집, 저장, 운송 및 처리를 했을 경우  (8) 위험폐기물을 여객운송도구와 공동으로 사용했을 경우  (9) 위험폐기물을 수집, 저장, 운송하는 장소, 시설, 설비, 용기, 포장제품에 대해 오염소독처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10) 상응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이 흘렸거나 또는 유실, 침투되어 환경오염을 초래했을 경우  (11) 운송과정에서 위험폐기물을 흘렸거나 또는 마음대로 버렸을 경우  (12) 위험폐기물의 의외사고 방지조치 및 응급처리방안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1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관리대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한 사실대로 기록하지도 않았을 경우.  전항 (1), (2), (5), (6), (7), (8), (9), (10), (12), (13)호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고 (3), (4), (10), (11)호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될 처리 소요비용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처벌을 하며 처리 소요비용이 20만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0만위안으로 계산한다.  **제11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폐기물 생산자가 규정에 따라 자체 발생한 위험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아 시정 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생태화경 주관부문은 역량을 동원하여 대신 처리하며 처리비용은 위험물 생산자가 부담한다. 처리비용의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처리 비용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제114조** 허가증이 없이 위험폐기물을 수집,저장, 이용, 처리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문에서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10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함과 아울러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친 후 조업정지 혹은 폐업을 명한다.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는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수집, 저장, 이용,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시정하도록 하고 생산제한 혹은 생산중지 정돈을 명하며 50만위안 이상 2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자에 대해서는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준권한이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조업정지 혹은 폐업을 명하며, 허가기관에서는 허가증을 몰수할 수도 있다.  **제11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고체폐기물을 경내에서 수입한 경우 세관은 당해 고체폐기물을 반송하도록 명하고 5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한다.  운송업자는 전항에서 규정한 고체폐기물의 반송, 처리에 대하여 수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116조** 이 법의 규정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을 통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이전하는 경우 세관는 당해 위험폐기물을 반송을 명하며 5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할 수 있다.  **제117조** 밀수 고체폐기물에 대해 성(省)급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에서 세관에 처리의견을 제출하며 세관은 이 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벌금처벌을 한다. 이미 환경오염을 초래했을 경우,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문에서 수입자에게 오염을 처리하도록 명령을 한다.  **제11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그 밖에 생태환경 주관부문은 이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부 정비조치를 취하도록 명한다. 중대 혹은 특대 고체폐기물 환경사고를 초래한 경우에는 비준권한의 있는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폐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일반 혹ㅇ느 비교적 큰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사고를 초래한 경우 사고로 초래된 직접적 경제손실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중대 혹은 특대 고체폐기물 환경오염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고로 초래된 직접적 경제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과 아울러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인원에게 직전 연도 본단위에서 취득한 소득의 5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119조** 회사와 기타 생사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고체폐기물을 배출하여 벌금 처벌을 받고 시정 령을 받은 경우 법에 따라 처벌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은 재검사를 진행하며,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날마다 연속 처벌한다.  **제12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에 해당되나 범죄는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책임인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속을 하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속을 한다.   1. 고체폐기물을 마음대로 쏟거나 적치하거나 버려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2. 생태보호 레드라인구역, 영구 기본농경지 집중구역 및 기타 특별보호 구역 내에서 산업고체폐기물, 위험폐기물 집중 저장, 이용, 처리 시설, 장소 및 생활스레기 매립장을 건설한 경우 3. 위험폐기물을 허가증이 없는 회사 혹은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적치, 이용, 처리하도록 한 경우 4. 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고체폐기물 수집, 저장, 이용, 처리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5. 비준이 없이 마음대로 위험폐기물을 이전한 경우 6.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험폐기물의 확산, 유실, 침입 혹은 기타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   **제121조** 고체폐기물이 환경을 오염하거나 생태를 파괴하고 국가이익, 사회 공공이익에 손상을 입힌 경우 유관기관과 조직은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2조** 고체폐기물이 환경을 오염하거나 생태를 파괴하여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인민정부 혹은 그가 지정한 부문, 기구는 환경오염과 생태파괴를 초리한 회사와 기타 생산경영자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며, 협상 미결인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 집행과정 중에서 조사 취득한, 책임자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반송이 어려운 고체폐기물은 소재지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 처리한다.  **제123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치안관리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으며, 인신, 재산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24조** 이 법의 아래 용어의 함의:  (1) 고체폐기물: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에서 생성된 고유 이용가치를 상실했거나 또는 비록 고유 이용가치를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포기 당했거나 또는 포기한 고체상태, 반고체상태 및 용기에 존재하는 기체상태의 물품, 물질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한 고체폐기물 관리 범위에 나열된 물품, 물질을 가리키며, 무해화 가공처리를 거치고 강제성 국가제품품질표준에 부합되고 공중의 건강과 생태안전에 해를 끼치지 않거나 혹은 고체폐기물 감별기준과 감별절차에 따라 고체폐기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산업고체폐기물: 산업생산과정에서 생성된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3) 생활쓰레기: 일상생활 또는 일상생활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체폐기물,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생활쓰레기로 간주해야 될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4) 건축쓰레기: 건설회사, 시상회사에서 각종 건추물, 구조물, 파이프망 망 등을 신축, 개축, 확장 혹은 철거하거나 거주민주택 인테리어 과정에서 생성된 흙, 버리는 자재 및 기타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5) 농업고체폐기물: 농업생산 활동 중에서 발생된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6) 위험폐기물: 국가 위험폐기물 목록에 나열되었거나 또는 국가에서 규정한 위험폐기물 감별표준, 감별방법에 따라 인증을 거친 위험특성이 있는 고체폐기물을 가리킨다.  (7) 저장: 고체폐기물을 임시적으로 특정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해두는 활동을 가리킨다.  (8) 이용: 고체폐기물에서 물질을 추출하여 원자재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9) 처리: 고체폐기물소각 및 기타 고체폐기물 형태를 개변시키는 물리, 화학, 생물특성 방법을 이용하여 고체폐기물 발생량의 수량 또는 고체폐기물의 체적 또는 위해 성분을 제거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또한 고체폐기물을 최종적으로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게끔 매립방식을 취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제125조** 액상폐기물의 오염방지 역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수체(水體)에 배출한 폐수의 오염방지는 관련 법률을 적용하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26조**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한다. |  |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四十三号）**  **《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已由中华人民共和国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七次会议于2020年4月29日修订通过，现予公布，自2020年9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主席　习近平**  **2020年4月29日**  **中华人民共和国**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1995年10月30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六次会议通过；2004年12月29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三次会议第一次修订；根据2013年6月29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文物保护法〉等十二部法律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2015年4月24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等七部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根据2016年11月7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等十二部法律的决定》第三次修正；2020年4月29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七次会议第二次修订）  **目 录**  **第一章**  总 则  **第二章**  监督管理  **第三章** 工业固体废物  **第四章**  生活垃圾  **第五章** 建筑垃圾、农业固体废物等  **第六章**  危险废物  **第七章**  保障措施  **第八章**  法律责任  **第九章**  附 则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保护和改善生态环境，防治固体废物污染环境，保障公众健康，维护生态安全，推进生态文明建设，促进经济社会可持续发展，制定本法。  **第二条**  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适用本法。  固体废物污染海洋环境的防治和放射性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不适用本法。  **第三条**  国家推行绿色发展方式，促进清洁生产和循环经济发展。  国家倡导简约适度、绿色低碳的生活方式，引导公众积极参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  **第四条**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坚持减量化、资源化和无害化的原则。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采取措施，减少固体废物的产生量，促进固体废物的综合利用，降低固体废物的危害性。  **第五条**  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坚持污染担责的原则。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和个人，应当采取措施，防止或者减少固体废物对环境的污染，对所造成的环境污染依法承担责任。  **第六条**  国家推行生活垃圾分类制度。  生活垃圾分类坚持政府推动、全民参与、城乡统筹、因地制宜、简便易行的原则。  **第七条**  地方各级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负责。  国家实行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目标责任制和考核评价制度，将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目标完成情况纳入考核评价的内容。  **第八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领导，组织、协调、督促有关部门依法履行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  省、自治区、直辖市之间可以协商建立跨行政区域固体废物污染环境的联防联控机制，统筹规划制定、设施建设、固体废物转移等工作。  **第九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对全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农业农村、商务、卫生健康、海关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监督管理工作。  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实施统一监督管理。地方人民政府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交通运输、农业农村、商务、卫生健康等主管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监督管理工作。  **第十条**  国家鼓励、支持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科学研究、技术开发、先进技术推广和科学普及，加强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科技支撑。  **第十一条**  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基层群众性自治组织和新闻媒体应当加强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宣传教育和科学普及，增强公众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意识。  学校应当开展生活垃圾分类以及其他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知识普及和教育。  **第十二条**  各级人民政府对在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以及相关的综合利用活动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第二章  监督管理**  **第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生态环境保护规划，并采取有效措施减少固体废物的产生量、促进固体废物的综合利用、降低固体废物的危害性，最大限度降低固体废物填埋量。  **第十四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根据国家环境质量标准和国家经济、技术条件，制定固体废物鉴别标准、鉴别程序和国家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技术标准。  **第十五条**  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生态环境、农业农村等主管部门，制定固体废物综合利用标准。  综合利用固体废物应当遵守生态环境法律法规，符合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技术标准。使用固体废物综合利用产物应当符合国家规定的用途、标准。  **第十六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全国危险废物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信息平台，推进固体废物收集、转移、处置等全过程监控和信息化追溯。  **第十七条**  建设产生、贮存、利用、处置固体废物的项目，应当依法进行环境影响评价，并遵守国家有关建设项目环境保护管理的规定。  **第十八条**  建设项目的环境影响评价文件确定需要配套建设的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使用。建设项目的初步设计，应当按照环境保护设计规范的要求，将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内容纳入环境影响评价文件，落实防治固体废物污染环境和破坏生态的措施以及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投资概算。  建设单位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对配套建设的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设施进行验收，编制验收报告，并向社会公开。  **第十九条**  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加强对相关设施、设备和场所的管理和维护，保证其正常运行和使用。  **第二十条**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采取防扬散、防流失、防渗漏或者其他防止污染环境的措施，不得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固体废物。  禁止任何单位或者个人向江河、湖泊、运河、渠道、水库及其最高水位线以下的滩地和岸坡以及法律法规规定的其他地点倾倒、堆放、贮存固体废物。  **第二十一条**  在生态保护红线区域、永久基本农田集中区域和其他需要特别保护的区域内，禁止建设工业固体废物、危险废物集中贮存、利用、处置的设施、场所和生活垃圾填埋场。  **第二十二条**  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贮存、处置的，应当向固体废物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提出申请。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及时商经接受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同意后，在规定期限内批准转移该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未经批准的，不得转移。  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利用的，应当报固体废物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移出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将备案信息通报接受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  **第二十三条**  禁止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进境倾倒、堆放、处置。  **第二十四条**  国家逐步实现固体废物零进口，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发展改革、海关等主管部门组织实施。  **第二十五条**  海关发现进口货物疑似固体废物的，可以委托专业机构开展属性鉴别，并根据鉴别结论依法管理。  **第二十六条** 生态环境主管部门及其环境执法机构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有权对从事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等活动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进行现场检查。被检查者应当如实反映情况，并提供必要的资料。  实施现场检查，可以采取现场监测、采集样品、查阅或者复制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相关的资料等措施。检查人员进行现场检查，应当出示证件。对现场检查中知悉的商业秘密应当保密。  **第二十七条**  有下列情形之一，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可以对违法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的固体废物及设施、设备、场所、工具、物品予以查封、扣押：  （一）可能造成证据灭失、被隐匿或者非法转移的；  （二）造成或者可能造成严重环境污染的。  **第二十八条**  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建立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信用记录制度，将相关信用记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  **第二十九条**  设区的市级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住房城乡建设、农业农村、卫生健康等主管部门，定期向社会发布固体废物的种类、产生量、处置能力、利用处置状况等信息。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应当依法及时公开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信息，主动接受社会监督。  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应当依法向公众开放设施、场所，提高公众环境保护意识和参与程度。  **第三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工业固体废物、生活垃圾、危险废物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情况纳入环境状况和环境保护目标完成情况年度报告，向本级人民代表大会或者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  **第三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对造成固体废物污染环境的单位和个人进行举报。  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将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举报方式向社会公布，方便公众举报。  接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处理并对举报人的相关信息予以保密；对实名举报并查证属实的，给予奖励。  举报人举报所在单位的，该单位不得以解除、变更劳动合同或者其他方式对举报人进行打击报复。  **第三章  工业固体废物**  **第三十二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等主管部门对工业固体废物对公众健康、生态环境的危害和影响程度等作出界定，制定防治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技术政策，组织推广先进的防治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生产工艺和设备。  **第三十三条**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组织研究开发、推广减少工业固体废物产生量和降低工业固体废物危害性的生产工艺和设备，公布限期淘汰产生严重污染环境的工业固体废物的落后生产工艺、设备的名录。  生产者、销售者、进口者、使用者应当在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期限内分别停止生产、销售、进口或者使用列入前款规定名录中的设备。生产工艺的采用者应当在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期限内停止采用列入前款规定名录中的工艺。  列入限期淘汰名录被淘汰的设备，不得转让给他人使用。  **第三十四条**  国务院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发展改革、生态环境等主管部门，定期发布工业固体废物综合利用技术、工艺、设备和产品导向目录，组织开展工业固体废物资源综合利用评价，推动工业固体废物综合利用。  **第三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规划，组织建设工业固体废物集中处置等设施，推动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  **第三十六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建立健全工业固体废物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全过程的污染环境防治责任制度，建立工业固体废物管理台账，如实记录产生工业固体废物的种类、数量、流向、贮存、利用、处置等信息，实现工业固体废物可追溯、可查询，并采取防治工业固体废物污染环境的措施。  禁止向生活垃圾收集设施中投放工业固体废物。  **第三十七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委托他人运输、利用、处置工业固体废物的，应当对受托方的主体资格和技术能力进行核实，依法签订书面合同，在合同中约定污染防治要求。  受托方运输、利用、处置工业固体废物，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和合同约定履行污染防治要求，并将运输、利用、处置情况告知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违反本条第一款规定的，除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处罚外，还应当与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受托方承担连带责任。  **第三十八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依法实施清洁生产审核，合理选择和利用原材料、能源和其他资源，采用先进的生产工艺和设备，减少工业固体废物的产生量，降低工业固体废物的危害性。  **第三十九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取得排污许可证。排污许可的具体办法和实施步骤由国务院规定。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向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提供工业固体废物的种类、数量、流向、贮存、利用、处置等有关资料，以及减少工业固体废物产生、促进综合利用的具体措施，并执行排污许可管理制度的相关规定。  **第四十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应当根据经济、技术条件对工业固体废物加以利用；对暂时不利用或者不能利用的，应当按照国务院生态环境等主管部门的规定建设贮存设施、场所，安全分类存放，或者采取无害化处置措施。贮存工业固体废物应当采取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的防护措施。  建设工业固体废物贮存、处置的设施、场所，应当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  **第四十一条**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终止的，应当在终止前对工业固体废物的贮存、处置的设施、场所采取污染防治措施，并对未处置的工业固体废物作出妥善处置，防止污染环境。  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发生变更的，变更后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的规定对未处置的工业固体废物及其贮存、处置的设施、场所进行安全处置或者采取有效措施保证该设施、场所安全运行。变更前当事人对工业固体废物及其贮存、处置的设施、场所的污染防治责任另有约定的，从其约定；但是，不得免除当事人的污染防治义务。  对2005年4月1日前已经终止的单位未处置的工业固体废物及其贮存、处置的设施、场所进行安全处置的费用，由有关人民政府承担；但是，该单位享有的土地使用权依法转让的，应当由土地使用权受让人承担处置费用。当事人另有约定的，从其约定；但是，不得免除当事人的污染防治义务。  **第四十二条**  矿山企业应当采取科学的开采方法和选矿工艺，减少尾矿、煤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的产生量和贮存量。  国家鼓励采取先进工艺对尾矿、煤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进行综合利用。  尾矿、煤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贮存设施停止使用后，矿山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等规定进行封场，防止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  **第四章  生活垃圾**  **第四十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快建立分类投放、分类收集、分类运输、分类处理的生活垃圾管理系统，实现生活垃圾分类制度有效覆盖。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生活垃圾分类工作协调机制，加强和统筹生活垃圾分类管理能力建设。  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组织开展生活垃圾分类宣传，教育引导公众养成生活垃圾分类习惯，督促和指导生活垃圾分类工作。  **第四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有计划地改进燃料结构，发展清洁能源，减少燃料废渣等固体废物的产生量。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加强产品生产和流通过程管理，避免过度包装，组织净菜上市，减少生活垃圾的产生量。  **第四十五条**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统筹安排建设城乡生活垃圾收集、运输、处理设施，确定设施厂址，提高生活垃圾的综合利用和无害化处置水平，促进生活垃圾收集、处理的产业化发展，逐步建立和完善生活垃圾污染环境防治的社会服务体系。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统筹规划，合理安排回收、分拣、打包网点，促进生活垃圾的回收利用工作。  **第四十六条**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农村生活垃圾污染环境的防治，保护和改善农村人居环境。  国家鼓励农村生活垃圾源头减量。城乡结合部、人口密集的农村地区和其他有条件的地方，应当建立城乡一体的生活垃圾管理系统；其他农村地区应当积极探索生活垃圾管理模式，因地制宜，就近就地利用或者妥善处理生活垃圾。  **第四十七条**  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应当制定生活垃圾清扫、收集、贮存、运输和处理设施、场所建设运行规范，发布生活垃圾分类指导目录，加强监督管理。  **第四十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等主管部门应当组织对城乡生活垃圾进行清扫、收集、运输和处理，可以通过招标等方式选择具备条件的单位从事生活垃圾的清扫、收集、运输和处理。  **第四十九条**  产生生活垃圾的单位、家庭和个人应当依法履行生活垃圾源头减量和分类投放义务，承担生活垃圾产生者责任。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依法在指定的地点分类投放生活垃圾。禁止随意倾倒、抛撒、堆放或者焚烧生活垃圾。  机关、事业单位等应当在生活垃圾分类工作中起示范带头作用。  已经分类投放的生活垃圾，应当按照规定分类收集、分类运输、分类处理。  **第五十条** 清扫、收集、运输、处理城乡生活垃圾，应当遵守国家有关环境保护和环境卫生管理的规定，防止污染环境。  从生活垃圾中分类并集中收集的有害垃圾，属于危险废物的，应当按照危险废物管理。  **第五十一条**  从事公共交通运输的经营单位，应当及时清扫、收集运输过程中产生的生活垃圾。  **第五十二条**  农贸市场、农产品批发市场等应当加强环境卫生管理，保持环境卫生清洁，对所产生的垃圾及时清扫、分类收集、妥善处理。  **第五十三条**  从事城市新区开发、旧区改建和住宅小区开发建设、村镇建设的单位，以及机场、码头、车站、公园、商场、体育场馆等公共设施、场所的经营管理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环境卫生的规定，配套建设生活垃圾收集设施。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统筹生活垃圾公共转运、处理设施与前款规定的收集设施的有效衔接，并加强生活垃圾分类收运体系和再生资源回收体系在规划、建设、运营等方面的融合。  **第五十四条** 从生活垃圾中回收的物质应当按照国家规定的用途、标准使用，不得用于生产可能危害人体健康的产品。  **第五十五条**  建设生活垃圾处理设施、场所，应当符合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和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规定的环境保护和环境卫生标准。  鼓励相邻地区统筹生活垃圾处理设施建设，促进生活垃圾处理设施跨行政区域共建共享。  禁止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生活垃圾处理设施、场所；确有必要关闭、闲置或者拆除的，应当经所在地的市、县级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商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同意后核准，并采取防止污染环境的措施。  **第五十六条**  生活垃圾处理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安装使用监测设备，实时监测污染物的排放情况，将污染排放数据实时公开。监测设备应当与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的监控设备联网。  **第五十七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负责组织开展厨余垃圾资源化、无害化处理工作。  产生、收集厨余垃圾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将厨余垃圾交由具备相应资质条件的单位进行无害化处理。  禁止畜禽养殖场、养殖小区利用未经无害化处理的厨余垃圾饲喂畜禽。  **第五十八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按照产生者付费原则，建立生活垃圾处理收费制度。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制定生活垃圾处理收费标准，应当根据本地实际，结合生活垃圾分类情况，体现分类计价、计量收费等差别化管理，并充分征求公众意见。生活垃圾处理收费标准应当向社会公布。  生活垃圾处理费应当专项用于生活垃圾的收集、运输和处理等，不得挪作他用。  **第五十九条**  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可以结合实际，制定本地方生活垃圾具体管理办法。  **第五章  建筑垃圾、农业固体废物等**  **第六十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建筑垃圾污染环境的防治，建立建筑垃圾分类处理制度。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包括源头减量、分类处理、消纳设施和场所布局及建设等在内的建筑垃圾污染环境防治工作规划。  **第六十一条**  国家鼓励采用先进技术、工艺、设备和管理措施，推进建筑垃圾源头减量，建立建筑垃圾回收利用体系。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推动建筑垃圾综合利用产品应用。  **第六十二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负责建筑垃圾污染环境防治工作，建立建筑垃圾全过程管理制度，规范建筑垃圾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行为，推进综合利用，加强建筑垃圾处置设施、场所建设，保障处置安全，防止污染环境。  **第六十三条**  工程施工单位应当编制建筑垃圾处理方案，采取污染防治措施，并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备案。  工程施工单位应当及时清运工程施工过程中产生的建筑垃圾等固体废物，并按照环境卫生主管部门的规定进行利用或者处置。  工程施工单位不得擅自倾倒、抛撒或者堆放工程施工过程中产生的建筑垃圾。  **第六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农村主管部门负责指导农业固体废物回收利用体系建设，鼓励和引导有关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依法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农业固体废物，加强监督管理，防止污染环境。  **第六十五条**  产生秸秆、废弃农用薄膜、农药包装废弃物等农业固体废物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应当采取回收利用和其他防止污染环境的措施。  从事畜禽规模养殖应当及时收集、贮存、利用或者处置养殖过程中产生的畜禽粪污等固体废物，避免造成环境污染。  禁止在人口集中地区、机场周围、交通干线附近以及当地人民政府划定的其他区域露天焚烧秸秆。  国家鼓励研究开发、生产、销售、使用在环境中可降解且无害的农用薄膜。  **第六十六条**  国家建立电器电子、铅蓄电池、车用动力电池等产品的生产者责任延伸制度。  电器电子、铅蓄电池、车用动力电池等产品的生产者应当按照规定以自建或者委托等方式建立与产品销售量相匹配的废旧产品回收体系，并向社会公开，实现有效回收和利用。  国家鼓励产品的生产者开展生态设计，促进资源回收利用。  **第六十七条**  国家对废弃电器电子产品等实行多渠道回收和集中处理制度。  禁止将废弃机动车船等交由不符合规定条件的企业或者个人回收、拆解。  拆解、利用、处置废弃电器电子产品、废弃机动车船等，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的规定，采取防止污染环境的措施。  **第六十八条**  产品和包装物的设计、制造，应当遵守国家有关清洁生产的规定。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应当根据国家经济和技术条件、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状况以及产品的技术要求，组织制定有关标准，防止过度包装造成环境污染。  生产经营者应当遵守限制商品过度包装的强制性标准，避免过度包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加强对过度包装的监督管理。  生产、销售、进口依法被列入强制回收目录的产品和包装物的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该产品和包装物进行回收。  电子商务、快递、外卖等行业应当优先采用可重复使用、易回收利用的包装物，优化物品包装，减少包装物的使用，并积极回收利用包装物。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商务、邮政等主管部门应当加强监督管理。  国家鼓励和引导消费者使用绿色包装和减量包装。  **第六十九条**  国家依法禁止、限制生产、销售和使用不可降解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  商品零售场所开办单位、电子商务平台企业和快递企业、外卖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商务、邮政等主管部门报告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的使用、回收情况。  国家鼓励和引导减少使用、积极回收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推广应用可循环、易回收、可降解的替代产品。  **第七十条**  旅游、住宿等行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推行不主动提供一次性用品。  机关、企业事业单位等的办公场所应当使用有利于保护环境的产品、设备和设施，减少使用一次性办公用品。  **第七十一条** 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或者污泥处理单位应当安全处理污泥，保证处理后的污泥符合国家有关标准，对污泥的流向、用途、用量等进行跟踪、记录，并报告城镇排水主管部门、生态环境主管部门。  县级以上人民政府城镇排水主管部门应当将污泥处理设施纳入城镇排水与污水处理规划，推动同步建设污泥处理设施与污水处理设施，鼓励协同处理，污水处理费征收标准和补偿范围应当覆盖污泥处理成本和污水处理设施正常运营成本。  **第七十二条**  禁止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城镇污水处理设施产生的污泥和处理后的污泥。  禁止重金属或者其他有毒有害物质含量超标的污泥进入农用地。  从事水体清淤疏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清淤疏浚过程中产生的底泥，防止污染环境。  **第七十三条**  各级各类实验室及其设立单位应当加强对实验室产生的固体废物的管理，依法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实验室固体废物。实验室固体废物属于危险废物的，应当按照危险废物管理。  **第六章  危险废物**  **第七十四条**  危险废物污染环境的防治，适用本章规定；本章未作规定的，适用本法其他有关规定。  **第七十五条**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国家危险废物名录，规定统一的危险废物鉴别标准、鉴别方法、识别标志和鉴别单位管理要求。国家危险废物名录应当动态调整。  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根据危险废物的危害特性和产生数量，科学评估其环境风险，实施分级分类管理，建立信息化监管体系，并通过信息化手段管理、共享危险废物转移数据和信息。  **第七十六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编制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建设规划，科学评估危险废物处置需求，合理布局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确保本行政区域的危险废物得到妥善处置。  编制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建设规划，应当征求有关行业协会、企业事业单位、专家和公众等方面的意见。  相邻省、自治区、直辖市之间可以开展区域合作，统筹建设区域性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  **第七十七条**  对危险废物的容器和包装物以及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设施、场所，应当按照规定设置危险废物识别标志。  **第七十八条**  产生危险废物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危险废物管理计划；建立危险废物管理台账，如实记录有关信息，并通过国家危险废物信息管理系统向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申报危险废物的种类、产生量、流向、贮存、处置等有关资料。  前款所称危险废物管理计划应当包括减少危险废物产生量和降低危险废物危害性的措施以及危险废物贮存、利用、处置措施。危险废物管理计划应当报产生危险废物的单位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产生危险废物的单位已经取得排污许可证的，执行排污许可管理制度的规定。  **第七十九条**  产生危险废物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和环境保护标准要求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不得擅自倾倒、堆放。  **第八十条** 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申请取得许可证。许可证的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制定。  禁止无许可证或者未按照许可证规定从事危险废物收集、贮存、利用、处置的经营活动。  禁止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许可证的单位或者其他生产经营者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活动。  **第八十一条**  收集、贮存危险废物，应当按照危险废物特性分类进行。禁止混合收集、贮存、运输、处置性质不相容而未经安全性处置的危险废物。  贮存危险废物应当采取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的防护措施。禁止将危险废物混入非危险废物中贮存。  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单位，贮存危险废物不得超过一年；确需延长期限的，应当报经颁发许可证的生态环境主管部门批准；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第八十二条**  转移危险废物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填写、运行危险废物电子或者纸质转移联单。  跨省、自治区、直辖市转移危险废物的，应当向危险废物移出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申请。移出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应当及时商经接受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同意后，在规定期限内批准转移该危险废物，并将批准信息通报相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和交通运输主管部门。未经批准的，不得转移。  危险废物转移管理应当全程管控、提高效率，具体办法由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会同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和公安部门制定。  **第八十三条**  运输危险废物，应当采取防止污染环境的措施，并遵守国家有关危险货物运输管理的规定。  禁止将危险废物与旅客在同一运输工具上载运。  **第八十四条**  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场所、设施、设备和容器、包装物及其他物品转作他用时，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过消除污染处理，方可使用。  **第八十五条**  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单位，应当依法制定意外事故的防范措施和应急预案，并向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备案；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进行检查。  **第八十六条**  因发生事故或者其他突发性事件，造成危险废物严重污染环境的单位，应当立即采取有效措施消除或者减轻对环境的污染危害，及时通报可能受到污染危害的单位和居民，并向所在地生态环境主管部门和有关部门报告，接受调查处理。  **第八十七条**  在发生或者有证据证明可能发生危险废物严重污染环境、威胁居民生命财产安全时，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立即向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人民政府有关部门报告，由人民政府采取防止或者减轻危害的有效措施。有关人民政府可以根据需要责令停止导致或者可能导致环境污染事故的作业。  **第八十八条**  重点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退役前，运营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设施、场所采取污染防治措施。退役的费用应当预提，列入投资概算或者生产成本，专门用于重点危险废物集中处置设施、场所的退役。具体提取和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规定。  **第八十九条**  禁止经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危险废物。  **第九十条**  医疗废物按照国家危险废物名录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强医疗废物集中处置能力建设。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健康、生态环境等主管部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加强对医疗废物收集、贮存、运输、处置的监督管理，防止危害公众健康、污染环境。  医疗卫生机构应当依法分类收集本单位产生的医疗废物，交由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处置。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及时收集、运输和处置医疗废物。  医疗卫生机构和医疗废物集中处置单位，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医疗废物流失、泄漏、渗漏、扩散。  **第九十一条**  重大传染病疫情等突发事件发生时，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统筹协调医疗废物等危险废物收集、贮存、运输、处置等工作，保障所需的车辆、场地、处置设施和防护物资。卫生健康、生态环境、环境卫生、交通运输等主管部门应当协同配合，依法履行应急处置职责。  **第七章  保障措施**  **第九十二条**  国务院有关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编制国土空间规划和相关专项规划时，应当统筹生活垃圾、建筑垃圾、危险废物等固体废物转运、集中处置等设施建设需求，保障转运、集中处置等设施用地。  **第九十三条**  国家采取有利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经济、技术政策和措施，鼓励、支持有关方面采取有利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措施，加强对从事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人员的培训和指导，促进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产业专业化、规模化发展。  **第九十四条**  国家鼓励和支持科研单位、固体废物产生单位、固体废物利用单位、固体废物处置单位等联合攻关，研究开发固体废物综合利用、集中处置等的新技术，推动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技术进步。  **第九十五条**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固体废物污染环境的防治，按照事权划分的原则安排必要的资金用于下列事项：  （一）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科学研究、技术开发；  （二）生活垃圾分类；  （三）固体废物集中处置设施建设；  （四）重大传染病疫情等突发事件产生的医疗废物等危险废物应急处置；  （五）涉及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的其他事项。  使用资金应当加强绩效管理和审计监督，确保资金使用效益。  **第九十六条**  国家鼓励和支持社会力量参与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并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政策扶持。  **第九十七条**  国家发展绿色金融，鼓励金融机构加大对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项目的信贷投放。  **第九十八条** 从事固体废物综合利用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工作的，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享受税收优惠。  国家鼓励并提倡社会各界为防治固体废物污染环境捐赠财产，并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税收优惠。  **第九十九条**  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危险废物的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投保环境污染责任保险。  **第一百条**  国家鼓励单位和个人购买、使用综合利用产品和可重复使用产品。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政府采购过程中，应当优先采购综合利用产品和可重复使用产品。  **第八章  法律责任**  **第一百零一条**  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一）未依法作出行政许可或者办理批准文件的；  （二）对违法行为进行包庇的；  （三）未依法查封、扣押的；  （四）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后未予查处的；  （五）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违法行为的。  依照本法规定应当作出行政处罚决定而未作出的，上级主管部门可以直接作出行政处罚决定。  **第一百零二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一）产生、收集、贮存、运输、利用、处置固体废物的单位未依法及时公开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信息的；  （二）生活垃圾处理单位未按照国家有关规定安装使用监测设备、实时监测污染物的排放情况并公开污染排放数据的；  （三）将列入限期淘汰名录被淘汰的设备转让给他人使用的；  （四）在生态保护红线区域、永久基本农田集中区域和其他需要特别保护的区域内，建设工业固体废物、危险废物集中贮存、利用、处置的设施、场所和生活垃圾填埋场的；  （五）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贮存、处置未经批准的；  （六）转移固体废物出省、自治区、直辖市行政区域利用未报备案的；  （七）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工业固体废物，或者未采取相应防范措施，造成工业固体废物扬散、流失、渗漏或者其他环境污染的；  （八）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未建立固体废物管理台账并如实记录的；  （九）产生工业固体废物的单位违反本法规定委托他人运输、利用、处置工业固体废物的；  （十）贮存工业固体废物未采取符合国家环境保护标准的防护措施的；  （十一）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反固体废物管理其他要求，污染环境、破坏生态的。  有前款第一项、第八项行为之一，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五项、第六项、第九项、第十项、第十一项行为之一，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七项行为，处所需处置费用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所需处置费用不足十万元的，按十万元计算。对前款第十一项行为的处罚，有关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适用其规定。  **第一百零三条**  违反本法规定，以拖延、围堵、滞留执法人员等方式拒绝、阻挠监督检查，或者在接受监督检查时弄虚作假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或者其他负有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监督管理职责的部门责令改正，处五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四条**  违反本法规定，未依法取得排污许可证产生工业固体废物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或者限制生产、停产整治，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  **第一百零五条**  违反本法规定，生产经营者未遵守限制商品过度包装的强制性标准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有关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二千元以上二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六条**  违反本法规定，未遵守国家有关禁止、限制使用不可降解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的规定，或者未按照国家有关规定报告塑料袋等一次性塑料制品的使用情况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商务、邮政等主管部门责令改正，处一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零七条**  从事畜禽规模养殖未及时收集、贮存、利用或者处置养殖过程中产生的畜禽粪污等固体废物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可以处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  **第一百零八条**  违反本法规定，城镇污水处理设施维护运营单位或者污泥处理单位对污泥流向、用途、用量等未进行跟踪、记录，或者处理后的污泥不符合国家有关标准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造成严重后果的，处十万元以上二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  违反本法规定，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城镇污水处理设施产生的污泥和处理后的污泥的，由城镇排水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二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处二百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城镇排水主管部门可以指定有治理能力的单位代为治理，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  **第一百零九条**  违反本法规定，生产、销售、进口或者使用淘汰的设备，或者采用淘汰的生产工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部门责令改正，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部门提出意见，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  **第一百一十条**  尾矿、煤矸石、废石等矿业固体废物贮存设施停止使用后，未按照国家有关环境保护规定进行封场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二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一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责令改正，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  （一）随意倾倒、抛撒、堆放或者焚烧生活垃圾的；  （二）擅自关闭、闲置或者拆除生活垃圾处理设施、场所的；  （三）工程施工单位未编制建筑垃圾处理方案报备案，或者未及时清运施工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的；  （四）工程施工单位擅自倾倒、抛撒或者堆放工程施工过程中产生的建筑垃圾，或者未按照规定对施工过程中产生的固体废物进行利用或者处置的；  （五）产生、收集厨余垃圾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未将厨余垃圾交由具备相应资质条件的单位进行无害化处理的；  （六）畜禽养殖场、养殖小区利用未经无害化处理的厨余垃圾饲喂畜禽的；  （七）在运输过程中沿途丢弃、遗撒生活垃圾的。  单位有前款第一项、第七项行为之一，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单位有前款第二项、第三项、第四项、第五项、第六项行为之一，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个人有前款第一项、第五项、第七项行为之一，处一百元以上五百元以下的罚款。  违反本法规定，未在指定的地点分类投放生活垃圾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卫生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单位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依法处以罚款。  **第一百一十二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以罚款，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可以责令停业或者关闭：  （一）未按照规定设置危险废物识别标志的；  （二）未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危险废物管理计划或者申报危险废物有关资料的；  （三）擅自倾倒、堆放危险废物的；  （四）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许可证的单位或者其他生产经营者从事经营活动的；  （五）未按照国家有关规定填写、运行危险废物转移联单或者未经批准擅自转移危险废物的；  （六）未按照国家环境保护标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或者将危险废物混入非危险废物中贮存的；  （七）未经安全性处置，混合收集、贮存、运输、处置具有不相容性质的危险废物的；  （八）将危险废物与旅客在同一运输工具上载运的；  （九）未经消除污染处理，将收集、贮存、运输、处置危险废物的场所、设施、设备和容器、包装物及其他物品转作他用的；  （十）未采取相应防范措施，造成危险废物扬散、流失、渗漏或者其他环境污染的；  （十一）在运输过程中沿途丢弃、遗撒危险废物的；  （十二）未制定危险废物意外事故防范措施和应急预案的；  （十三）未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危险废物管理台账并如实记录的。  有前款第一项、第二项、第五项、第六项、第七项、第八项、第九项、第十二项、第十三项行为之一，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有前款第三项、第四项、第十项、第十一项行为之一，处所需处置费用三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所需处置费用不足二十万元的，按二十万元计算。  **第一百一十三条**  违反本法规定，危险废物产生者未按照规定处置其产生的危险废物被责令改正后拒不改正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组织代为处置，处置费用由危险废物产生者承担；拒不承担代为处置费用的，处代为处置费用一倍以上三倍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四条**  无许可证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处一百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并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对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十万元以上一百万元以下的罚款。  未按照许可证规定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由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改正，限制生产、停产整治，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元以下的罚款；对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五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停业或者关闭，还可以由发证机关吊销许可证。  **第一百一十五条**  违反本法规定，将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固体废物输入境内的，由海关责令退运该固体废物，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承运人对前款规定的固体废物的退运、处置，与进口者承担连带责任。  **第一百一十六条**  违反本法规定，经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危险废物的，由海关责令退运该危险废物，处五十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七条**  对已经非法入境的固体废物，由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依法向海关提出处理意见，海关应当依照本法第一百一十五条的规定作出处罚决定；已经造成环境污染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责令进口者消除污染。  **第一百一十八条**  违反本法规定，造成固体废物污染环境事故的，除依法承担赔偿责任外，由生态环境主管部门依照本条第二款的规定处以罚款，责令限期采取治理措施；造成重大或者特大固体废物污染环境事故的，还可以报经有批准权的人民政府批准，责令关闭。  造成一般或者较大固体废物污染环境事故的，按照事故造成的直接经济损失的一倍以上三倍以下计算罚款；造成重大或者特大固体废物污染环境事故的，按照事故造成的直接经济损失的三倍以上五倍以下计算罚款，并对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上一年度从本单位取得的收入百分之五十以下的罚款。  **第一百一十九条**  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违反本法规定排放固体废物，受到罚款处罚，被责令改正的，依法作出处罚决定的行政机关应当组织复查，发现其继续实施该违法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的规定按日连续处罚。  **第一百二十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行为之一，尚不构成犯罪的，由公安机关对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处十日以上十五日以下的拘留；情节较轻的，处五日以上十日以下的拘留：  （一）擅自倾倒、堆放、丢弃、遗撒固体废物，造成严重后果的；  （二）在生态保护红线区域、永久基本农田集中区域和其他需要特别保护的区域内，建设工业固体废物、危险废物集中贮存、利用、处置的设施、场所和生活垃圾填埋场的；  （三）将危险废物提供或者委托给无许可证的单位或者其他生产经营者堆放、利用、处置的；  （四）无许可证或者未按照许可证规定从事收集、贮存、利用、处置危险废物经营活动的；  （五）未经批准擅自转移危险废物的；  （六）未采取防范措施，造成危险废物扬散、流失、渗漏或者其他严重后果的。  **第一百二十一条**  固体废物污染环境、破坏生态，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有关机关和组织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等法律的规定向人民法院提起诉讼。  **第一百二十二条**  固体废物污染环境、破坏生态给国家造成重大损失的，由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或者其指定的部门、机构组织与造成环境污染和生态破坏的单位和其他生产经营者进行磋商，要求其承担损害赔偿责任；磋商未达成一致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  对于执法过程中查获的无法确定责任人或者无法退运的固体废物，由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处理。  **第一百二十三条**  违反本法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造成人身、财产损害的，依法承担民事责任。  **第九章  附 则**  **第一百二十四条**  本法下列用语的含义：  （一）固体废物，是指在生产、生活和其他活动中产生的丧失原有利用价值或者虽未丧失利用价值但被抛弃或者放弃的固态、半固态和置于容器中的气态的物品、物质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纳入固体废物管理的物品、物质。经无害化加工处理，并且符合强制性国家产品质量标准，不会危害公众健康和生态安全，或者根据固体废物鉴别标准和鉴别程序认定为不属于固体废物的除外。  （二）工业固体废物，是指在工业生产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  （三）生活垃圾，是指在日常生活中或者为日常生活提供服务的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以及法律、行政法规规定视为生活垃圾的固体废物。  （四）建筑垃圾，是指建设单位、施工单位新建、改建、扩建和拆除各类建筑物、构筑物、管网等，以及居民装饰装修房屋过程中产生的弃土、弃料和其他固体废物。  （五）农业固体废物，是指在农业生产活动中产生的固体废物。  （六）危险废物，是指列入国家危险废物名录或者根据国家规定的危险废物鉴别标准和鉴别方法认定的具有危险特性的固体废物。  （七）贮存，是指将固体废物临时置于特定设施或者场所中的活动。  （八）利用，是指从固体废物中提取物质作为原材料或者燃料的活动。  （九）处置，是指将固体废物焚烧和用其他改变固体废物的物理、化学、生物特性的方法，达到减少已产生的固体废物数量、缩小固体废物体积、减少或者消除其危险成分的活动，或者将固体废物最终置于符合环境保护规定要求的填埋场的活动。  **第一百二十五条**  液态废物的污染防治，适用本法；但是，排入水体的废水的污染防治适用有关法律，不适用本法。  **第一百二十六条**  本法自2020年9月1日起施行。 |